

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고

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31일

관 세 청 장

- 다 음 -

구 분	내 용
■ 지급금액 비율	▶ 실제 검사비용의 100%를 지급
■ 최대지급 금액	▶ 동일 검사유형·컨테이너규격·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
■ 기준 적용기간	▶ 2020년 9월 1일 신청분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별도 공고일까지

※ 다만,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,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○ 문의 사항 : 관세청 통관기획과 ☎ 042-481-7733